

화재안전조사계획 사전 공개

북부소방재난본부의 화재안전조사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
2023. 11. 22.

경기도지사



- 조사기간 : 2023. 11. 29. ~ 12. 30.
- 조사대상 : 총 8개(세부내역 별첨)
- 조사인원 : 5명 [본부 4(2인1조 2개조), 소방서 화재안전조사팀 1인]
- 조사사유 :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조사
- 조사방법 : ☐ 종합조사, ☒ 부분조사
- 주요 조사내용
 - 1.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
 - 2. 법 제24조, 제25조,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
 - 3.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 - 4. 법 제37조에 따른 소화·통보·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
 - 7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- 9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, 방화구획(防火區劃)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
 - 10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방염(防炎)에 관한 사항
 - 11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
 - 12.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, 제9조, 제9조의2, 제10조, 제10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- 13.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제5조, 제6조, 제14조,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- 15.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▷ 화재안전조사는 소방관서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 시행될 수 있음
- ▷ 위의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개될 수 있으며, 조사결과 공개에 이의가 있는 관계인은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- 문의전화 : 북부소방재난본부 예방과 ☎ 031-849-4032

화재안전조사 대상

연번	대상	위치	비고
1	원흥퍼스트푸르지오	경기도고양시덕양구권율대로512	23.11.29
2	부영애시앙	경기도남양주시도농로24(다산동4001-29)	23.11.30
3	선플렉스 본관(센플렉스 사우나)	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수레로9번길11	23.12.13
4	신해메디컬타워(다산킴질방)	경기도남양주시다산중앙로123번길22-80	23.12.05
5	브릭스타워(엠샘사우나)	경기도남양주시경춘로368	23.12.04
6	미래빌딩(다산미래학원)	경기도남양주시다산순환로459	23.12.01
7	금강펜테리움IX타워	경기도구리시갈매순환로166번길46	23.12.11
8	영스포렉스	경기도동두천시중앙로125	23.12.12
이	하	빈	칸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